

총장선임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p>제4조 (총장선임 기본절차) ① <u>(삭제)</u></p> <p>② <u>(삭제)</u></p> <p><u><신 설></u></p> <p>③ 이사장은 <u>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u> 총추위를 구성하여 <u>총추위에</u> 총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p> <p>④ 이사장은 <u>전항에 따라</u> 총추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 자를 차기 총장으로 임명한다.</p> <p>⑤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총장 궐위 시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차기 총장을 선임한다.</p> <p>⑥ <u>제3항 및 제5항</u>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할 경우 이사장은 필요시 총장 선임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 <u>시달</u>할 수 있다.</p>	<p>제4조(총장선임 기본절차) ① <u>이사장은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12개월 이전까지 이사회 내에 총장업적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하고, 평가위가 현 총장에 대한 업적평가를 실시하게 한다.</u></p> <p>② <u>전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된 후 이사장은 현 총장의 연임 의사를 확인한다.</u></p> <p>③ <u>현 총장이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업적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의결을 거쳐 연임 또는 불연임을 결정하며,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후임 총장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u></p> <p>④ <u>전항에 따라 현 총장을 불연임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현 총장이 연임 의사가 없음을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이사장은 총추위를 구성하고 총장후보자를 추천토록 요청한다.</u></p> <p>⑤ <u>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현 총장을 연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현 총장을 차기 총장으로 임명하며, 제4항에 따라 총장후보자 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는 총추위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된 자를 차기총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그 기한은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2개월 이전까지로 한다.</u></p> <p>⑥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총장 궐위 시에는 본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차기 총장을 선임한다.</p> <p>⑦ <u>제4항 및 제6항</u>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할 경우 이사장은 필요시 총장 선임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 <u>제안</u>할 수 있다.</p>
<p>제6조(구성) <u>(이하 삭제)</u></p>	<p>제6조(구성) ① <u>평가위 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1인 이상의 개방이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5인으로 선임한다.</u></p> <p>② <u>평가위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호선으로 선출한다.</u></p> <p>③ <u>평가위는 현 총장의 연임여부가 결정됨과 동시에 그 활동이 종료된다.</u></p>

제7조(기능) (이하 삭제)	제7조(기능)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업적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8조(평가) (이하 삭제)	제8조(평가) ① 평가위는 현 총장의 업적평가지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는 현 총장 업적평가지 학교 구성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제9조(경비 지원) (이하 삭제)	제9조(경비 지원) ① 법인은 평가위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이하 삭제)	제10조(간사) ① 평가위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1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법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1조(운영) (이하 삭제)	제11조(운영) 평가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구성) ① 법인은 이사회 내에 총추위를 두며, 총추위는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하는 법인 이사 4인과 학교의 전임교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u>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2인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추가로 총추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신설>	제12조(구성) ① 이사장은 이사회 내에 총추위를 두며, 총추위는 이사장이 선임하는 법인 이사 4인과 학교의 전임교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시 2인 이내에서 외부인사를 추가로 총추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총추위는 이사회가 차기 총장을 선임함과 동시에 그 활동이 종료된다.

<p>제13조(구성 시기) ① 이사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180일 이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30일 이내에 총추위를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200일 이전까지 학교에 교원 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의뢰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구성 시기) ① 이사장은 제4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9개월 이전까지 총추위를 구성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1개월 이내에 총추위를 구성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총추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법인에서는 총추위 구성기한일의 20일 이전까지 학교에 교원 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10일 이내에 추천을 의뢰한다.</p> <p>③ (현행과 동일)</p>
<p>제14조(위원의 자격상실) 총추위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p> <p>1. 본 규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총추위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자.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 선임한 위원의 해촉여부는 이사장이 결정한다.</p> <p>2. ~ 3. (생략)</p>	<p>제14조(위원의 자격상실) 총추위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p> <p>1. 본 규정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총추위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한 자. 다만,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 선임한 위원의 해촉은 이사장이 결정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5조(위원의 결원보충)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인 위원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 지명한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명하여 보충하고, 교원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여 보충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위원의 결원보충) 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이사인 위원과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이 추가 선임한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사장이 임명하여 보충하고, 교원 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추천된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여 보충한다.</p> <p>② (현행과 동일)</p>
<p>제17조(기능) ① (생략)</p> <p>② 총추위는 제4조 제6항에 따라 이사장이 시달하는 지침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수렴하여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한다.</p> <p><u><신설></u></p>	<p>제17조(기능) ① (현행과 동일)</p> <p>② 총추위는 제4조 제7항에 따라 이사장이 제안하는 의견과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자료와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집, 수렴하여 가장 적격자라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총장후보자로 추천한다.</p> <p>③ <u>필요한 경우 총추위원장은 총추위 의결을 거쳐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총추위 활동 경과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u></p>

<p>제22조(운영세칙) <u>총추위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추위에서 따로 정한다.</u></p>	<p>제22조(운영세칙) <u>총추위는 총추위 내 소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추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제25조(부당행위 금지) 총장후보대상자가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u>한 경우</u> 총추위는 해당자를 총장후보대상자에서 제외<u>시켜야 한다.</u></p>	<p>제25조(부당행위 금지) 총장후보대상자가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u>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 총추위는 해당자를 총장후보대상자에서 제외<u>시킬 수 있다.</u></p>
<p>제27조(추천기한) 총추위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u>60일</u> 이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u>150일</u>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p>	<p>제27조(추천기한) 총추위는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u>3개월</u> 이전까지 총장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u>7개월</u> 이내에 추천하여야 한다.</p>
<p>제31조(선임시한) 차기 총장의 선임은 늦어도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u>40일</u>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u>170일</u>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p>	<p>제31조(선임시한) 차기 총장의 선임은 늦어도 현 총장의 임기만료일 <u>2개월</u>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궐위시에는 궐위 후 <u>8개월</u>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p>
<p>제33조(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자) <u>총장후보대상자</u>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생략)</p>	<p>제33조(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자) <u>총장후보대상자 및 총장후보자</u>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p>
<p>제35조(법인 이사) 법인의 이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u>이사회</u>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 5. (생략)</p>	<p>제35조(법인 이사) 법인의 이사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u>이사회 및 관련 위원회</u>에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 5. (현행과 동일)</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6조(진상조사위원회) ① 본 규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를 위해 이사장은 이사회 내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 <u>② 진상조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시 대상자는 협조의 의무가 있으며 협조의무 위반시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위반에 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제37조(위반시 제재) 본 규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하였을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학칙,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인사조치 및 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u>이 규정은 2021년 7월 15일부로 개정, 시행한다.</u></p>